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7호
2024. 5. 9.(목)

차 례

공 고(1)

-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공고 제2024-543호) 1

행정예고(1)

- 2024년 지능형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4-537호) 10

그 밖의 사항(1)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충청남도 금산소방서 공고 제2024-835호) 14

공	람								
---	---	--	--	--	--	--	--	--	--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원 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공공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3. 지원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4.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범위·비율·한도 등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금액	비고
계		40,000천원	
내진성능평가비	100%	3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인증수수료	100%	1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 지원 한도금액 산출 근거】

-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기준금액 30,000천원×지원비율 1.0 = **30,000천원**
-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기준금액 10,000천원×지원비율 1.0 = **10,000천원**

5.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기간, 제출 장소 등

○ 제출 기간: 2024. 5. 9. ~ 2024. 5. 24. (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 제출 방법: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지원 기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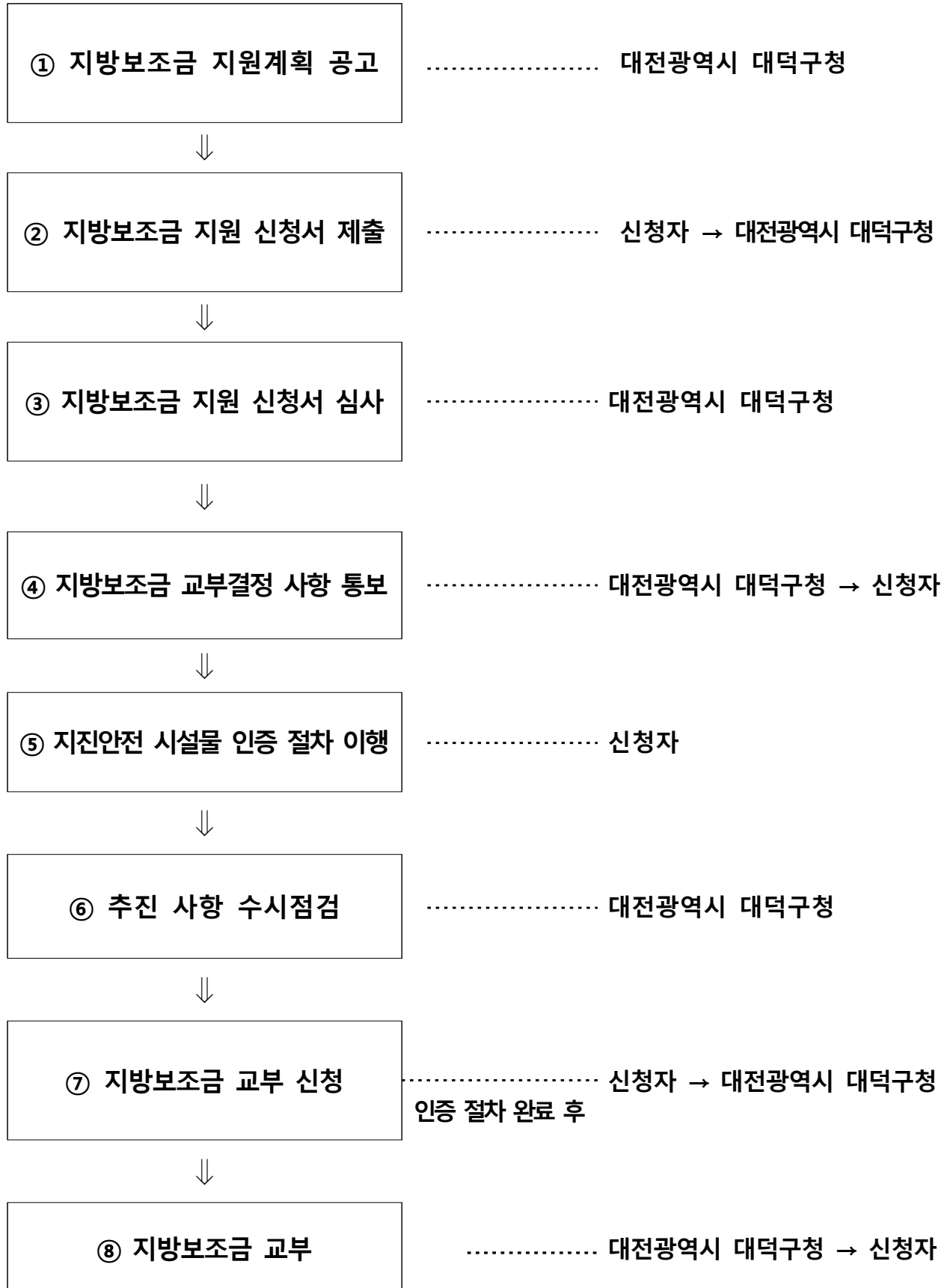
7.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총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를 받은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 한 후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자부담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8.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시 유의 사항

- 1)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밀안전진단 시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여야만 인증신청이 가능

- 3)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로 하며,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042-608-5353) 문의.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

구 분	내 용	
건축물 명칭		
소재지	(새주소)	
소유자 등	성 명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
	주 소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 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내진설계 적용여부* : 해당란에 “○” 를 표기

2. 추진계획

가. 소요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5년 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

나.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용역 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평가결과*	
				성능확보	미확보
용역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예정	년 월 ~ 년 월	※예정금액 기재	※기재생략 가능		

☞ (확인사항)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21.6.10)에 따라, 인증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 평가서를 ‘ 건축구조기술사 ‘ 직인이 필요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수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

추진계획	인증수수료*(천원)
2025년 월 ~ 2025년 월	※ 납부 예정금액 기재

☞ 인증수수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

3.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계			
내진성능 평가비			
인증수수료			

☞ 작성요령

1) 내진성능 평가비

①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 없음

②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지원한도 금액 30,000천원 / 자부담 : 지원한도 금액 초과분

2) 인증수수료

①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 없음

②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지원한도금액 10,000천원 / 자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

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2024년 지능형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주변 지능형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로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방범용(6개소 / 85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4. 5. 9. ~ 2024. 5. 28.(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5. 28.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내용
-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042-608-6093 fax 042-608-3939)

【첨부1】

대덕구 지능형 CCTV 설치 장소

붙임 1

지능형 CCTV 신규설치 예정지 (학교주변 6개소)

연번	행정동	설치위치	설치장소	비고
	계	6개소 21대		
1	송촌동	대덕구 선비마을로 155	매봉초등학교 인근	
2	오정동	대덕구 동산초교로 63번길 12	대전생활과학고 인근	
3	송촌동	대덕구 선비마을로 23번길11	송촌고등학교 인근	
4	중리동	대덕구 청림길 33	동대전고등학교 인근	
5	석봉동	대덕구 석봉로 3번길 50	신탄진초등학교 인근	
6	중리동	대덕구 중리로64번길 45	중원초등학교 인근	변경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4.(15일간)
2.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고사유	위반법률	위반사유	과태료(가산금포함)
한종명	폐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의 용도폐지 신고지연	914,200원 (금구십일만사천이백원)

4. 반송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34, 307동 1010호(법동, 주공아파트)
5.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 대응예방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소방서 대응예방과(☎041-750-1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장

